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169

제출년월일: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함공원은 서울함(호위함)과 참수리 고속정, 돌고래급 잠수함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호국 정신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심의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서울함공원 시설 유지관리 외에도 각종 전시·공연 프로그램과 고객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

나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
다. 위탁기간 : 3년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
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13조 (위탁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함공원의 시설관리 및 각종 행사 진행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사무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
- 안보·테마 공원으로서 해군과의 협업,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, 안보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재위탁 추진코자 함
- 마. 위탁사무내용 : 서울함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
 - 함상공원 관리 : 공원 청소 및 관리, 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비, 이용자 안전 확보
 - 프로그램 운영 : 전시기획, 문화공연,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
 - 홍보·마케팅 :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 및 관람객 유치
 - 성과관리 :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ㆍ시행
- 기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수행
- 바. 위탁시설 개요
 - 소재지 : 서울시 미포구 미포나루길 407(망원한강공원 내 리틀야구장 옆)
 - 규 모 : 대지면적 8,275*m*²
 - 시설물 : 안내센터(485 m², 2층), 퇴역함정 3척, 도교 및 정박시설, 미디어월 등



< 시설별 위치도 >



< 서울함 >



< 고속정 >

- 인력현황 : 8명
- 센터장 1명, 행정·안내반 3명, 전시·행사반 2명, 시설·미화반 2명
- 위치도



- 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- 아. 소요예산 : 금966백만원(2023년 예산)
- 인건비 366백만원, 운영비 286백만원, 사업비 168백만원, 기타 146백만원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3, 7, 5.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○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12조
 - 제12조(공원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한강공원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**별표** 1에 정한 공원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※ 서울함공원은 별표 1에 따른 수상이용시설(서울함) 및 그 밖의 시설(시민 여가 지원)

○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13조

제13조(위탁운영 등)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**위탁**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3.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4.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시립병원, 보건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8.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
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종합성과평가 결과 75.18점

※ 근 거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
제10조(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)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.

※ 작성자 :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윤성일(☎ 3780-0735)